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8
----------	-------

발의연월일 : 2023. 3. 9.

발의자 : 정필모 · 윤영찬 · 민형배  
조승래 · 홍정민 · 김남국  
박광온 · 변재일 · 김민기  
이재정 · 진성준 · 윤호중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

조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제13조제2항</u> 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③ (생 략)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13조제3항</u>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9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u> <u>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u> <u>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u> <u>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⑤ (생 략)</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제11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생 략) <u>&lt;신 설&gt;</u>	제11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u> <u>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u> <u>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u>

<p>② (생 략)</p> <p>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 ① (생 략)</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제31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u></p> <p>2. ~ 5.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u>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제13조제3항----- ----- ----- -----</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